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마포구)

□ 민원 제목 : □□로 102 침수피해 대책마련 및 차량진출입로 변경 민원

□ 신청 취지

- 민원인 소유의 건물 주변 도로의 구조변경으로 인해 건물 지대가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져 집중호우 시 건물이 자주 침수됨에 따라 민원인이 구상한 방안을 토대로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
 - 건물 우측 후면 경사가 평행하지 않아 이미 설치된 빗물받이로는 우수의 유입이 원활하지 못해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하수거 설치와 ○○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쪽으로 대형맨홀을 설치 요청
 - ○○오거리 방향 차량 진출입로를 건물우측 하단으로 변경하고 기존 진출입로의 원래 경계석을 높여줄 것을 요청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보행행정과 의견
 - 도로점용을 위한 진출입로 연장이 도로경계부터 주차구역까지 거리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로 도로점용허가 지침 상 진출입로 변경은 불가하고 변경 시 기존의 보도에 불법 무단주차 가능성이 있음
 - 경계석 격상과 보도구간 평탄화 작업은 '수익자 부담'사안임.
- 도로개선과 의견
 - 기존 경계석을 격상하고 보도구간 평탄화 작업 여부는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'수익자 부담'사안임.
- 물관리과 의견
 - 횡단하수거를 차도에 설치하는 것은 이면도로일 경우 가능하지만 이외의 도로상에는 설치가 불가하며, 대형맨홀은 하수 및 시설점검을 위한 사항이고 빗물처리시설이 아니므로 의미가 없음.
 - 그러나, 현재 빗물받이를 침수구역까지 최대한 연장할 수 있음.

□ 신청인 등의 주장

○ 민원인의 주장

- 마포구 관내 모든 건물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○ 민원인의 구체적 요구사항

- 차량 진출입로 변경요청
- 도로를 가로지르는 트렌치 설치 요청
- 도로 중앙에 대형맨홀 설치 요청
- 건물 대지 경계석 상향 요청



<민원인 요청사항>

□ 관계 법령 등

- 도로법 제61조, 제66조, 제117조제2항(도로를 점용하는 자, 점용료, 과태료 등)
- 도로법 제54조제5항(도로점용 허가기준 등)
-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의2(풍수해 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사항)
- 하수도법 제7조제1항(하수도구조물 및 맨홀 등의 설치기준)

□ 판단 및 결론

○ 읍부즈만 판단

- 민원인의 주장에 따른 피해상황에 공감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및 검토하였으나, 도로의 구조변경은

수익자 부담 원칙에 해당되고 민원인은 이에 대한 부담을 거부하고 있어 민원인의 주장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그 대안으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방안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봄

○ 결론

□□로 102 건물은 주변지형 등의 변경으로 인한 구조적으로 저지대가 되어 집중호우 시 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. 그러나 민원의 주요 내용에 대한 조치는 허가조건에 미치지 못하고 구 예산으로 구조변경을 할 수 없는 사안이며, 또한 민원인도 원인자 부담을 원치 않고 있다. 따라서 건물우측 하단 빗물받이를 침수가 예상되는 지점까지 연장설치를 요청하고,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집중 호우 시 예상되는 침수에 대비한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이 지역 (마포구 □□로 102)을 담당부서(물관리과)의 '상습침수 관리구역'에 포함하여 줄 것을 '의견 표명'한다.